강사 임용 규정

전문제정 2019.07.24. 개정 2021.11.04. 개정 2022.04.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혜전학원 정관 제39조와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50조, 교원인사규정 제10조 및 제22조에 따라 강사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

강사는 이 규정에 정한 채용절차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본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3조 (임용자격)

강사의 임용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강사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 한다.

제4조 (임용시기 및 임용기간)

강사의 임용 시기는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임용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의 신규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폐강 등의 사유로 신규 임용된 강사의 담당과목이 없어진 경우
2. 논문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
3. 강사의 임용자격에 미달된 경우

제6조 (채용)

① 강사의 채용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채용(이하 “공채”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이하 “특채”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공채가 불가능한 교과목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학기 중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자가 발생한 경우

② 총장은 해당 학과로부터 채용분야 신청을 받아 본교의 운영방침, 학과의 사정, 해당 교과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채 및 특채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채용의 경우 제8조에 따른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에 결격이 없는자 중 계열장 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채용한다. <개정 2021.11.04.>

제7조 (채용공고)

교내신문 또는 본교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① 강사의 지원 자격은 이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②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 지원서(소정 양식)
2. 최종학위증명서
3. 교육 및 연구업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9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학과별 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계열장 및 학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11.04.>

②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사는 [별표 1] 강사 신규임용 심사 평가표에 의한다. <개정 2021.11.04.>

제10조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가족 또는 친족, 그 밖에 학연, 지연 등 특수 관계로 심사에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심사위원은 제척된다.

② 심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될 시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11조 (합격자 판정)

① 합격판정은 단계별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판정한다. 다만 최종 지원자가 1명이거나, 학과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의결에 따라 교과목에 대한 전공적합성, 강의경력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다.

②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③ <삭제 2021.11.04.>

제12조 (재임용)

① 강사의 임용은 1년 이상이 원칙이며,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② 재임용 절차에 합격한 강사는 본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재임용한다.

③ 단, 재임용 절차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교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된 경우, 신입생이 없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의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재임용대상 통지)

재임용 대상 강사에게는 임용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임용 절차)

① 재임용 심사는 해당 계열 및 학과에서 진행한다.

② 강사의 재임용 조건은 [별표 2]에서 정한 재임용 평가표의 총점이 70점 이상이며, 심사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재임용 평가표 총점이 7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강의평가 점수가 2개 학기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재임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04.>

③ <삭제 2021.11.04.>

제15조 (재임용기간)

강사의 재임용 시기는 3월 1일과 9월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재임용 될 수 없다.

단, 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재임용 할 수 있다.<개정 2022.04.12.>

제16조 (신분)

① 강사는 임용과 동시에 소속 학과 교원의 신분을 갖는다.

② 강사는 형의 선고,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의무)

강사는 담당과목의 강의와 이에 따르는 학생지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강의계획서, 성적평가 및 입력, 교육이수 등 학생교육을 위해 본교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 (담당시간)

강사의 주당시간은 6시간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 과목 및 담당시간은 매학기 변경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주당 3시간 범위 내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초과강의를 할 수 있다.

제19조 (급여 및 퇴직금)

① 강사의 급여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의하여 산정하며, 학기별 강의시수에 따라 본교 강사료 지급기준 내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강사의 1주 강의시간에 강의 연구 및 강의 이외 업무처리 소요 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말한다.

③ 강사의 임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중 매 학기마다 강의를 담당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임용계약)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임용기간, 급여, 강의시수, 재임용조건,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 폐강 시에 임용계약을 취소하거나 급여 및 강의시수가 조정될 수 있다는 조항, 면직 사유, 기타 복무사항을 명기하여 [별표 3]에 의거하여 계약한다.

제21조 (겸직금지)

강사로 임용된 경우 계약기간동안 타 대학의 전임교원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 (당연퇴직)

재임용에 탈락한 경우 당연 퇴직한다.

제23조 (면직)

총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직 할 수 있다.

1. 폐강 등으로 인하여 담당과목이 없는 경우
2. 본 규정 제20조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본 규정 제21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4조 (임면에 관한 보고)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2019.07.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되었던 시간강사 임용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2021.11.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0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4.1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강사 신규임용 심사 평가표<개정2021.11.04.>

강사 신규임용 심사 평가표(기초·전공심사용)

소속	성명	교원자격기준
		적합□, 부적합□

심사 항목		배점	세부 심사 항목	심사점수
기초심사			- 전공영역의 일치성 및 적합성	□적합 □부적합
전공 심사	① 최종학력	30	- 박사졸업 (30점) - 석사졸업 (27점) - 학사졸업 (24점) - 전문학사 (21점)	
	② 교육경력	20	- 교육경력 5년 이상 (20점) - 교육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18점) - 교육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16점) - 교육경력 1년 미만 (14점)	
	③ 산업체경력	20	- 산업체경력 5년 이상 (20점) - 산업체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18점) - 산업체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16점) - 산업체경력 1년 미만 (14점)	
	④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 심사	10	- 논문, 저서 등의 연구실적물이 2편 이상인 경우 (10점) - 논문, 저서 등의 연구실적물이 1편 이상인 경우 (8점) ※ 학위논문 제외, 공저의 경우도 1편으로 인정 가능	
	⑤ 발전 가능성	20	- 교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20점)	
	⑥ 자격증		- 초빙분야 관련 자격증 (10점)	(가점)
합계		100		

▣ 합격기준 점수는 60점 이상으로 함.

▣ 기초심사에서 모집전공과 지원자의 전공은 취득학위를 근거로 적합여부를 판정하며, 심사위원간 이견을 있을 경우 심사위원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 평가함.

▣ 전공심사에서 교육경력, 연구실적물 및 자격증(가점) 인정기준은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심의토록 함.

심사위원회 평가의견	
평가결과	□합격 □불합격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위	심사위원장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심사위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심사위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심사위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심사위원	성명	(인 또는 서명)

[별표 2] 강사 재임용 평가표<개정2021.11.04.>

강사 재임용 평가표

소속	성명	교원자격기준
		적합□, 부적합□

평가항목	항목배점	배점한도	취득점수
- 수업기간 준수 ※ 수업 미 준수 시 1건당 2점 감점	10	10점	
- 휴강 및 보강 준수 ※ 휴강 및 보강 미 준수 시 1건당 3점 감점	10	10점	
- 강의평가 평점 90점 이상 - 강의평가 평점 80점 이상 ~ 90점 미만 - 강의평가 평점 70점 이상 ~ 80점 미만 - 강의평가 평점 50점 이상 ~ 70점 미만 - 강의평가 평점 50점 미만 ※ 100점 만점	50 45 40 35 30	50점	
- CQI(수업개선) 보고서 작성	20	20점	
- 교원으로서의 자질 및 학과기여도 ※ 종합적으로 평가	10	10점	
합계		100점	

1) 재임용 기준 : 70점 이상(단, 기준점수를 충족하더라도 강의평가 점수가 2개 학기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재임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2) 강의평가점수 : 100점 만점 기준이며, 해당 강사의 학기별 강의평가점수 평균으로 평가함.
3) 강사 재임용 평가는 심사위원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 평가함.

심사위원회 평가의견	
평가결과(재임용 여부)	□예 □아니요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위	심사위원장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심사위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심사위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심사위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심사위원	성명	(인 또는 서명)

[별표 3] 강사근로계약서

강사 근로 계약서

혜전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_____(이하 “을” 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 체결한다.

제1조 (계약 내용)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강사 임용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 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2. 학기별 주당 담당시간

구분	1학기		2학기		비고
	과목명	시수	과목명	시수	
수업(이론)					
수업(실습)					
합계					

3. 급여 : 본 대학 강사료 지급기준 내규에 의함
4. 급여 지급 방법 : 매월 지급
5. 복무 등 근무조건 : 교육관계법령 및 교원인사규정에 의함
6. 면직 : 강사임용규정 제23조에 의함
7. 재임용 : 강사임용규정 제12조에 의함

제2조 (계약 해지 및 변경) “을”이 위촉과 관련하여 “갑”에게 제출한 서류 중에 허위사실이나 허위서류가 있을 경우, 폐강 또는 폐과 등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도 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강의시수 및 급여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기타 계약 조건)

1. “을”은 본교 제규정 등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갑”과 “을”이 각각 계약서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혜전대학교 총장 (인)

(을) 소 속 :
성 명 : (인)
주 소 :